#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73 발의연월일: 2024. 12. 6.

발 의 자 : 임오경·김재원·문정복

정성호 • 민병덕 • 한민수

임미애 · 김용만 · 박 정

차지호 · 강선우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이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위헌·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의혹 등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한편, 참석한 국무위원 중 계엄에 반대한 국무위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또한,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이후 이를 국회에 통고하지 않아 「계엄법」을 위반하고, 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회의 회의 진행을 방해함.

이에 계엄 선포를 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무 위원 과반수 출석의 출석 국무위원 삼 분의 이 이상의 무기명 찬성투표를 받을 때에만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계엄령 효력은 국회에 통고서가 도달한 시점부터 발휘하도록 하여 위헌·불법적인 윤석열 친위

쿠데타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제4조제1항).

법률 제 호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국무회의를 거쳐 국무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국무위원 삼 분의 이 이상 찬성의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통고(通告)하여야 한다"를 "통고(通告)하여야 하며, 통고서가 도달한 때부터 효력을 발휘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①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	⑤		
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u>국무</u>	<u>국무</u>		
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회의를 거쳐 국무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국무위원 삼 분의		
	이 이상 찬성의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			
는 지체 없이 국회에 <u>통고(通</u>	통고(通		
告)하여야 한다.	告)하여야 하며, 통고서가 도달		
	한 때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